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서 | 기관의 | 장 |
|------------|-----|---|
| _ C 결 | | |

고 시

제2020-13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 제2020-130호 | 2020년 거창군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
|------------|--|
| | 시행 공고 |
| 제2020-131호 | 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
| | 지원사업 공고9 |
| 제2020-132호 | 2020년 거창군 운행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 23 |
| 제2020-133호 | 『남하 내곡마을 ~ 구88고속도로 연결공사』보상계획 열람 공고…39 |
| 제2020-134호 | 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LPG엔진 개조 지원사업 시행 공고 42 |
| 제2020-135호 |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53 |
| 제2020-136호 | 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61 |
| 제2020-145호 |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
| 제2020-152호 | 거창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
| | 열람공고 |

| 세2020-158호 | 노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50호선,소로3-101호선) 실시계획열담 |
|------------|---|
| |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76 |
| 제2020-162호 | 공시송달공고79 |
| 제2020-164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80 |
| 제2020-165호 | 거창군계획시설(소로2-196호선,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
| | 열람공고81 |

|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 - 1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1. 29.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273-17 등 2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 비고 |
|------|-------|--------|-----------------|----|
| | (별 | 도 열 람) | |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 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 부여

| 일련 | 7 T. 7 A | | 고 | 시 일 | E THE ALLO | | |
|----|----------------------------|-----------------------------|----------|----------|--|----|--|
| 번호 | 종전주소 - | 도로명주소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295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273-17 | 20091228 | 20200129 | 행정구역 웅양을 이용하여 웅양로로 명명 | | |
| 2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72-19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65 | 20090401 | 20200129 |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여덟번째 도로 | | |

2020년 거창군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시행 공고

2020년 거창군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거 창 군 수

1. 사업 개요

- O 사 업 명 : 거창군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0. 11. 30
- O 사업비 및 지원대상
 - ▶ 사업비: 1,511,800천원(국 755,900, 도 226,770, 군 529,130)
 - 슬레이트 처리 : 1,135,200천원(국 567,600 도 170,280 군 397,320)
 - 지붕개량 지원 : 256,200천원(국 128,100 도 38,430 군 89,670)
 - 비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 : 120,400천원(국 60,200 도 18,060 군 42,140)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 지붕개량 지원 : 주택슬레이트 처리자 중 기초수급자, 사회취약계층
- 비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 : 주택의 비필수적 구조물, 축사,

창고, 공장, 기타 방치슬레이트

- O 지원 우선순위
 - 주택슬레이트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이하가구→이외 일반가구 순
 - 지붕개량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충→기타 취약계층(전액보조)
 - 비주택슬레이트 : 사업신청자 중 소규모 신청면적 우선 지원
- O 지원금액
 - 주택슬레이트 처리 : 가구당 3,440천원(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붕개량 지원 : 전액보조
 - 비주택슬레이트 지원 : 가구당 1.720천원(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 업 량(계획) : 주택슬레이트 처리(670동) / 지붕개량 지원(40동) 비주택슬레이트 처리(70동)
- O 사업내용 :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지원

2.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 기간 : 2020. 1. 22.(수) ~ 2. 28.(금) 18:00 (40일간)
- O 접수 기간 : 2020. 1. 28.(화) ~ 2. 28.(금) 18:00 (24일간)
- O 접수장소 :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 O 접수방법: 방문 후 신청서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위치도 1부
-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940-3492) 문의

붙임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 | 성 명 | | | | | | | |
|---------|----------------------|--------------------------|-----------|------|--------|----------------|--|--|
| 신청자 현황 | 소재지 | | | | | | | |
| | 연락처(h.p) | | | | | | | |
| | 건축연도 | | | | | | | |
| 건축물 현황 | 건축연면적 (m²) | 계 | 주건물 | | 부속건물 | 기타 | | |
| | 관리유형 | 자가□, 약 | 입차□ | ア | 주현황 | 거주□, 빈집□ | | |
|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 | 등재□, 미등재□ | | | | | |
| | 가구유형 |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 | | | | | |
| 지원신청 | 신청내용 | 주택철거□, 지붕개량□ , 비주택철거□, | | | | | | |
| 내용 | 연계여부 |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 | | | | |
| 위와 같이 | 슬레이트 지붕 | 철거 지붕 | 개량 지역 | 원을 선 | 신청합니다. | | | |
| | | | 2020 . | |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 | | | |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 | |
| 거창군수 귀하 | | | | | | | | |
| 첨부서류 | 위치도 및 시 한함) 1부, ' | | | | | 는 서류(건축주에 등 | | |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 | | | | | |
|-----|----------------------|--|--|--|--|--|--|--|
| 성 명 | 소재지 | | | | | | | |
| | 위치도 | | | | | | | |
| | 사진 현황 | | | | | | | |

거창군 공고 제2020 - 131 호

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시업 공고

미세먼지 발생 및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후경** 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합니다.

2020. 1. 22.

거 창 군 수

| | 신청기 | リフト |
|---|-----|-----|
| ш | 건성기 | ľĽ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2020. 1. 28(화). ~ 2. 21(금).[4주간]
 -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위임장 첨부시 대리신청 가능) / 접수시 신청차량확인
 - **접수시간** : 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 접 수 처
 -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
 - 도로용3종건설기계 : 거창군청 환경과
 - 2. LPG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거창군청 환경과
 - ※ 사업물량 과다 및 서류 누락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E-mail, 우편, FAX 등 불가)
 - ※ 접수시 해당신청차량 확인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직접 방문하여야함.

□ 사업비 및 지원대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약 230대 정도(300백만원)
-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24대(96백만원)

□ 지원대상

-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방법 ◈

- O PC 또는 휴대폰 사용, 네이버, 다음 등 에서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입력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
 - ⇒ 등급확인("5등급"만 조기폐차 가능)
 - ② 거창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③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④ 자동차관리법 43조제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⑤ 조기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결과 확인서상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제출
 - 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u>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u>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관용차량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외

2.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① 지원조건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② 지원금액: 400만원/대(정액지원)
- ③ 우선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아님

- 신청접수 완료 후 아래 우선 순 (①→②)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①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 년 월 일)
 - ② 차량연식이 동일할 경우 차량 총중량이 큰 순
 - ⇒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차량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차량은위 순서와 별도로 우선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액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상한액 및 지원율 명시
- 총중량3.5톤 미만 : (상한액 인상) 165만원 → 300만원
 - ※ (지원율) 70% 기본 지원,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 이후 출고 차량)을 신규등록 시 30% 추가 지원
- 총중량3.5톤 이상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이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만원)

| '' |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 지원율 | | | | |
|-----------------------------|--------------------------|-------------------|---------|--------|-------|------|-------|--|
| _ | 구 분 | 기존 | 개정 | 기존 | | 개정 | | |
| | | 기는 | / በ ′ ଧ | 기본 | 추가 지원 | 기본 | 추가 지원 | |
| 총중량 3.5톤 미만 | | 165 | 300 | 100% - | | 70% | 30% | |
| | 3,500cc 이하 | 440 | 440 | | | 100% |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750 | | 200% | | | |
| 3.5톤 이상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1,100 | 100% | | | 200% | |
| | 7,500cc 초과 | 3,000 | 3,000 | | | | |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 3,000 | 3,000 | | | | | |

○ 선정비율

- 3.5톤미만 : 70%(예산범위내)- 3.5톤이상 : 20%(예산범위내)- 건설기계 : 10%(예산범위내)

※ 지원비율은 신청접수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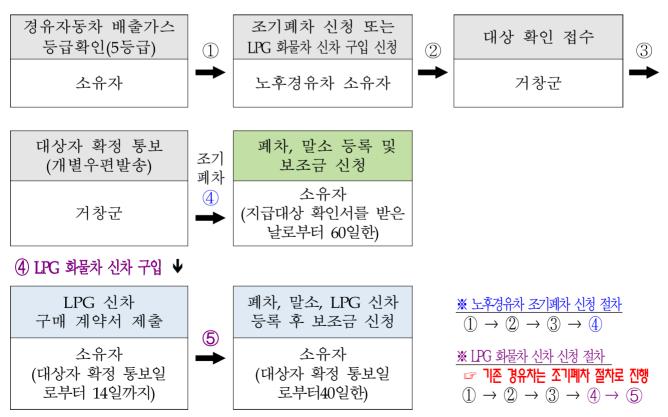
□ 조기폐차 금액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기준가액의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분기별 기준가액으로 산정.
-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단위로 하고 천원이하 단위는 절사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 서류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접수기간 내)

-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붙임 1 서식)
- ②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③ 신청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붙임 3)
- ⑤ 저소득층 지원대상 증빙서류(저소득층 지원대상일 경우) 해당자만 제출
- ⑥ 위임장(붙임 5 서식) 대리신청시
 -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법인 포함)의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상기 서류 제출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접수기간내 선착순 접수)

- ① 기본서류 : 경유차 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등록증 첨부
- ②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지원신청서(붙임 2 서식)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붙임 4)
- ④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 ⑤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2020. 3. 13.(금) 개별 통보 예정
- 선정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우편 및 문자발송

□ 보조금 지급 청구 : 지원대상 선정자에 한함

- **청구기간** : 2020. 5.13까지
 - 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선정자**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후 <u>2020.5.13.(수) 까지</u> 신청
 - ②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대상 선정자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20.5.13.(수)까지 신청(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제출)
- 청구장소 : 거창군청 환경과(4층)

- 청구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공통사항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조기폐차)
 -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조기폐차)
 - ③ 조기폐차 사업용 자동차 검사결과서 2부(조기폐차): 접수시 제출자는 생략
 - 발급업체 : 관내 지정 정비사업체 또는 자동차 검사소
 - ※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건설기계 검사결과 확인서 1부.
 - ④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공통) 및 신차구입차량등록증(LPG화물차)
 - ⑤ 위임장(대리 또는 보조금 수령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확인서(위임자)(공통)
 - ⑥ 소유자 통장사본(공통)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LPG 화물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붙임)
 - 신차 차량등록증, 소유자 통장사본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자동차 말소등록상 "폐차(자진폐차)" 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 반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제출 등)이 없거나 <u>보조금 지급</u>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기타 안내 사항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은 접수번호가 빠른(선착순) 순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후 순위자 선정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조금 포기 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30일내에 포기서를 꼭 제출 바랍니다.(붙임 6 서식) ☞ 방문 및 팩스(☎055-940-3759) 제출 가능
- 문의 : 거창군청 환경과(☎ 055-940-3492 조기폐차 담당자)

거창군 자동차검사소 현황

□ 한국교통안전공단 거창자동차 검사소

| 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
| 거창검사소 | 거창읍 밤티재로 1301 | ☎ 055-945-1444 | |

(붙임 1)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 | | | | 접- | 수번호 | |
|--|---|---|-----------|-------|----------|----------|-----------|---------|
| | , , , , , , | | , н | | | . 0 1 | | |
| | ①성 명 | | | ②주민 | 등록번호 | | | |
| 소유자 | ③주 소 | | | | | | | |
| | ④휴대폰 번호 | | | ⑤FAX | <u> </u> | | | |
| | ⑥자동차번호 | | | ⑦차대 | 번호 | | | |
| | | □ 연식(|)년 | | 배기량(|)CC | | |
| 대 상 | ⑧자동차제원 | 정원(승합) | T. | 녕 | | | | |
| 개 ° 자동차 | | 중량(화물) | □적 | 재중량 | ()톤 | □총중량(|)된 | Ē |
| | ⑨차명 및 형식 | / | | | 10)용 도 | - | | |
| | ①등록일자(차령) | 년 월 | 일 일 | . (년 | 월) | | | |
| | 12주행거리 | | | ① 사용 | - 연료 | | | |
| | ⑭검사 일자 | | | ① 검시 | · — | | | |
| 운행 상태 | 16)검사 결과 |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 |)% | | |
| ا ا ا | 같이 차량을 조기 | 운행차배 | | | | 11 7 7 7 |)% | 기 느 귀 기 |
| ※조기폐 ※ 주의 |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후 신차 구매여부 : 예, 아니오 / 신차구매시 별도 서류 제출요함. ※ 주의사항 1.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2020년 | 월 | 일 |
| 거창; | 군수 귀하 | | | 신* | 청자 : | | (서명 | 또는 인) |
| 구 비 2. 신 ² 비 3. 개 ⁴ 서 4. (대 | 동차등록증 또는 7 청자의 주민등록증이 인정보 수집·이용 (상일 경우) 저소득 임일 경우) 위임정 | 나 운전면허증 / 동의서(붙임 3 ·층 지원대상 ⁻ | 사본 서식) | 1부 | | | 저소득층 여 | 해당여·부 |
| |] 건 업무처리와 관 강 공무원 또는 절차 }니다. | | | _ | | | - | |
| | | | | 신 | 청자 : | | (서명 | 또는 인) |

(붙임 2)

| | | =1701 = | -101 1 | | TIO | | | 접~ | 수번호 |
|--|------------|---------|--------|------|------------|-------|------------|-----|------|
| LPG | 화물차 신 | 자구입 / | 시원 ^ | r땁 | 시원 | 신 | 경서 | | |
| | 성명 | | | • | 민등록 | | | | |
| | (법인/사업자명) | | | (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 <u>z</u>) | | |
| 신청자 | 주 소 | | | | | | | | |
| (소유자) | | (휴대폰) | | | | | | | |
| | 연락처 | (전 화) | | | | | | | |
| | | (이메일) | | | | | | | |
| | 차명 | | | 여 | .료 | | | | |
| -) T.=) | ~1 0 | | | | . 444 | | | | |
| 자동차 | 등록번호 | | 차종(정 | 원) | | | 제작연. | 도 | |
| | | | | | | | | | |
| 우선지 | 원대상자여부(O,X |) | 대성 | 가 종 | ·류 | | | | |
| LPG | 화물차 신차구입 | 지원 사업 | 기준에 브 | 부합하 | 여 보 | 조금을 | - 지원 | 받고지 | - 위와 |
| 같이 지 |]원신청서를 제출 | 합니다. | | | | | | | |
| | | | | | | 20201 | 년 | 월 | 일 |
| | 신청자 : (인) | | | | | | | | |
| 거창군수 귀하 | | | | | | | | | |
| ※ 첨부서류 1.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 | | | | | | | | |

(붙임 3)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호서식<신설>

| 확인번호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 | | |
|---|--------------------------------|---------------------|------------------|-------|--------------|--------|--------|
| | | | | | | | |
| | 성 명 | | | 주민등 | 등록번호 | | |
| 소유자 |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 | | | F | FAX | | |
| | 자동차번호 | | | 차대 | 대번호 | | |
| 신규 구매 차량 정보 | | □연식() [*] | 년 [|] 배기링 | ∮()C(| C 🗌 용도 | 三: () |
| | 자동차제원 | □차명: | □차명: □ 정원(승합): □ | | | | 명 |
| | | □적재중량(|) | 톤 □총 | 충중량(|)톤 | |
| | 등록일자(차령) | 년 { | 실 | 일 (| 년 월 |]) | |
| | 제작일자 | 년 5 | 실 | 일 | 사용연료 | | |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 |) | |
| 폐차 관련 | 말소 일자 | | | ' ' | 업체명 및 .재지 | | |
| | 을 조기폐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 ං | | | | 역을 신고 | 하오니, | 조기폐차에 |
|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거창군수 귀하 | | | | | | | |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페차 대상차량 확인서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

(붙임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 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 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5)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 | 힘 |
|--|----|---|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서명또는 인)

(붙임 6)

| റി | 6] | 71 |
|----|------------|----|
| 위 | 윆 | 장 |

| | 주 | 소 | |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성 | 명 | (인) |
| | 생년 | 월일 | |
| | 주 | 소 |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성 | 명 | (인) |
| | 생년 | 월일 | |

| 상기 위임기 | | 는(은) | 수임자_ | | 어 | <u> 게</u> 차 | 량번호 |
|--------|------------------|-------|----------|------|----|--------------|-----|
| | 호 자동차역 | 에 대한 | (노후차령 | ょ 조기 | 폐차 | 보조금 | ·지급 |
| 대상 확인 | 신청, <u>LPG</u> 3 | 화물차 선 | <u> </u> | 지원 / | 사업 | <u>신청</u>)에 | 관한 |
| 행위를 위역 | 임합니다. | | | | | | |

- 붙임 1. 위임자(법인포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 2. 위임자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붙임 7)

포 기 서

○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 포기사유:

2020. . .

포기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20 - 132호

2020년 거창군 운행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배출가스저감 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2.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O 주요내용

1)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 접수처 : 군청 환경과 신청서 접수 ⇒ 신청자가 장치제작사와 협의후 제작업체에서 위임대행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경유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2)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 접수처 : 군청 환경과 신청서 접수 ⇒ 신청자가 장치제작사와 협의후 제작업체에서 위임대행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5. 12. 31. 이전 등록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 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
- 3)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접수처 : 군청 환경과 신청서 접수 ⇒ 신청자가 장치제작사와 협의후 제작업체에서 위임대행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소유자
- 사업기간 : 2020. 1. 28.(화) ~ 예산 소진시까지
- O 사업내용 및 규모
 - 1)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약 8대 / 31,113천원) 2)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 ⇒2019년 이월분 : 약 9대 / 99,000천원, 2020년 : 22,000천원(2대분)
 - 3)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약 3대 / 49,500천원)
- O 사업신청서 접수
 - 가. 노후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군청 환경과 제출)
 - ⇒ 붙임서식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신청서] 작성
 - 나.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은 제작업체에서 적격여부 확인후 신청받아 거창군에 승인요청
 - ⇒ 붙임서식1~2, 서식 1,2,3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첨부
- O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1)저감장치 선정방법 : 예산범위내 선착순 접수(장치제작사 위임)
 - 2)엔진교체 선정방법 : 엔진교체 제작업체에 문의후 엔진교체 가능

여부 확인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교체진행방법-장치제작업체 위임)

O 사업대상 :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사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차량 선정

| 구 분 | 부착대상 |
|-----------|---|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 건설기계 DPF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 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 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2. 사업별 세부내용

1)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소유자(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우선지원) 단,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차량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지원 가능(장치제작사 판단)

- 사업규모 : 약 9대(31,113천원)

- 지워금액

○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대상차량의 배기량이 대형장치와 중형장 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1,000cc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240Ps 을 초과할 경우 대형장치 적용 가능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 | | | | 장치 가격 | | | | | |
|----------|--------|--------|------------|--------|-------|-------|-------|-----------|--|
| | 구 분 | | | 계 | 보조금 | 자기 | 부담 | 유지 관리비 | |
| | | | /1l | 모꼬급 | 금액 | 부담율 | | | |
| | | 자연대 | 형 | 5,988 | 5,391 | 597 | 10.0% | 462 | |
| | | 자연중 | 형 | 5,409 | 4,869 | 540 | 10.0% | 462 | |
| DDE | | 복합다 | 형 | 10,327 | 9,295 | 1,032 | 10.0% | 462 | |
| DPF | | 복합중 | 형 | 7,791 | 7,013 | 778 | 10.0% | 462 | |
| | 복합 RV, | | RV, 승합 | 3,727 | 3,262 | 465 | 12.5% | 462 | |
| | = | 소형 화물 | | 3,727 | 3,355 | 372 | 10.0% | 462 | |
| | | 저감효율 | RV, 승합 | 1,986 | 1,650 | 336 | 17.0% | 12 | |
| p-DPF | 소 | 70% 미단 | <u></u> 화물 | 1,986 | 1,699 | 287 | 14.5% | 12 | |
| p-DFF | 형 | 저감효율 | · RV, 승합 | 1,986 | 1,689 | 297 | 15.0% | 12 | |
| | | 70% 이성 | 화물 | 1,986 | 1,738 | 248 | 12.5% | 12 | |
| LPG | RV, 승합 | | 4,432 | 4,012 | 420 | 9.5% | 47 | | |
| 엔진 개조 | | 1톤 호 | 물 | 4,432 | 4,122 | 310 | 7.0% | 47 | |

-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 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 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합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생계형 차량 보조금 지원

- 제출서류 : 생계형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거창군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생계형 차량 여부 확인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조기폐차 신청일 및 구조변경검사완료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u>2005. 12. 31.</u> 이전 등록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 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
- 사업규모 : 약 11대(121,000천원)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유지관리비 |
|-----|------------|-------|
| 대 형 | 10,577 | 462 |
| 중형 | 7,778 | 462 |

-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 2)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3) 거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

- 사업규모 : 약 3대(49,500천원)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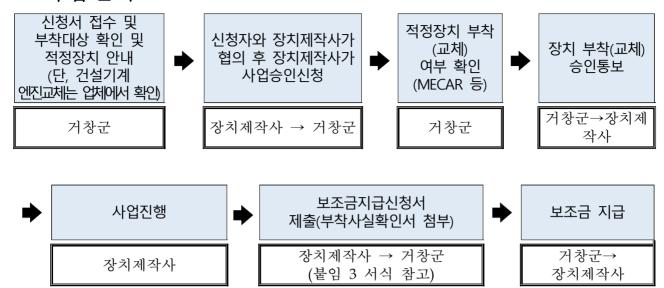
| | 지 게 차 | | | | 굴 삭 기 | | |
|---------------|--------|--------|--------|--------|--------|--------|--------|
| 구 분 | 2톤급 | | 4톤급 | 6厚ユ | 5톤급 | | 14톤 |
| | Tier3 | Tier4 | 4근 급 | 6톤급 | Tier3 | Tier4 | 급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12,993 | 16,390 | 20,838 | 22,927 | 19,013 | 19,541 | 29,518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3. 지원조건

- O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u>장치제작사와 사전 부착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가</u> 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O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을 득한 저감장치(엔진)를 부착(교체)할 것
- O 장치제작사가 거창군에 승인 신청할 때 신청자의 차량에 대하여 <u>환경개</u> 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을 것
- O 장치 부착 또는 엔진 교체 시 사전점검을 통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어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장치제작사 확인)
-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부착 후 <u>최소 2년간</u>, <u>엔진교체는 최소 3년간 의무적</u>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ㆍ폐차로 인해 등록 말소시 보조금 지원금액 기간별 회수 조치(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부착(교체)가능여부 확인을 한 장치제작사가 거창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장치 부착(교체) 후 보조금을 지원함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해야 함
- 장치는 임의 탈거 불가하며, 의무운행기간 후 차량 말소 시 거창군에 반납해야 함

4. 사업절차



5. 신청방법

- 가. 노후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지원
- O 신청자가 환경과 신청서 접수후 대상차량 적격여부 확인후 장치제 작사와 부착(교체) 가능여부 협의
- 부착(교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장치제작사가 거창군에 사업 승인 신청
- 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신청자가 교체업체와 협의후 <u>부착(교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장치제작</u> 사가 거창군에 사업 승인 신청
 - ➡사업신청시 차주와 장치제작사의 계약서 원본 제출
 - ➡장치 부착(교체) 신청과 보조금의 청구 · 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붙임2 서식)

6. 기타 사항

- O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2020. 환경부)에 따름
- O 안내문의
 - 거창군청 환경과 ☜ 055-940-3492
- * 붙임: 1. 저감장치 제작사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업체 현황 및 계약서 1부.
 - 2. 위임장 서식 1부.
 - 3.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식 1부.
- * 서식 : 1 ~ 4. 끝.

(참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업체 현황 O 차량 DPF 제작사 현황

| No | 제작사 | 연락처 | 장치명(배기량 기준) |
|----|---------|------------------------------|--|
| 1 | ㈜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34 | ○ 1종 DPF(17,000cc 이하, 3,000cc 이하) |
| 2 | 일진복합소재㈜ | 1588-7558 063-263-1700 | ○ 1종 DPF (17,000cc 이하, 3,000cc 이하) |
| 3 | HK-MnS㈜ | 1588-7657 070-4267-2727 | ○ 1종 DPF (17,000cc 이하, 3,000~11,000cc, 3,000cc 이하) |
| 4 | ㈜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 1종 DPF (17,000cc 이하, 3,000~11,000cc, 3,000cc 이하) |
| 5 | ㈜에코닉스 | 1666-3243 | ○ 1종 DPF (17,000cc 이하, 3,000cc 이하) |
| 6 | ㈜세라컴 | 02-2628-0900 041-531-0657 | ○ 1종 DPF (17,000cc 이하, 3,000cc 이하) |
| 7 | 화이버텍(주) | 031-942-9008 | ○ 1종 DPF(3,000cc 이하) |
| 8 | ㈜씨엠씨 | 031-358-6752 | ○ 1종 DPF(3,000cc 이하) |

O 건설기계 DPF 제작사 현황

| No | 제작사 | 연락처 | 장치명(배기량 기준) |
|----|-----------|------------------------------|--------------------------------------|
| 1 | ㈜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 대형(17,000cc이하), 중형(3,000~11,000cc) |
| 2 | ㈜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34 | ○ 대형(17,000cc이하) |
| 3 | HK-MnS(주) | 1588-7657 070-4267-2727 | ○ 대형(17,000cc이하), 중형(3,000~11,000cc) |
| 4 | 일진복합소재㈜ | 1588-7558 063-263-1700 | ○ 대형(17,000cc이하) |
| 5 | ㈜에코닉스 | 1666-3243 | ○ 대형(17,000cc이하) |
| 6 | ㈜세라컴 | 02-2628-0900 041-531-0657 | ○ 대형(17,000cc이하) |

O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

| No | 제작사 | 연락처 | 장치명(배기량 기준) | | |
|----|-----------|----------------------------|---|--|--|
| 1 | ㈜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031-940-2560 |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굴삭기 : 5톤급, 14톤급 | | |
| 2 | 엑시언 | 031-270-6300 | ○ 지게차 : 2톤급 | | |
| 3 | ㈜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굴삭기 : 5톤급 | | |
| 4 | HK-MnS(주) | 1588-7657 070-4267-2727 |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 |

(참고 : 계약서 추천 서식)

(붙임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2020년 거창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 현황

| 차 량 번 호 | | 소유 | 자 | | 저소득 해당 여부 유□,무□ | | |
|---------|-----|----|-----|----|-----------------|----------|--|
| 차량 총중량 | | kg | 연 | 식 | | 원동기 형식 | |
| 저속운행 여부 | 유□, | 무□ | 원동기 | 형식 | | - 보조금 만원 | |
| 장치 제작사 | | | 장치 | 종류 | | |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합니다.
- 장치부착 후 의무사용기간은 (2년), 엔진교체 후 의무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음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장치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까지 이며, 장치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교체)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 부착 및 개조 시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 계약서 원본은 거창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 〈장치 제작사〉 | 〈차량 소유자〉 | | |
|-----------------|-----------------------|--|--|
| 업체명 : | 차량번호 : | | |
| 업체명 : 소재지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연락처 : | | | |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연 락 처 : | | |

(붙임 2)

| | 위 | o] | 장 | |
|---------------------------|-------------------------|------------|---|-------------|
| 차 량 의 표 시 | 차량등록번호 차 명 저감장치종류 | : | | |
| 장치부착(엔? | 진교체)일 | | 년 월 | 일 |
| 위임의 내용 | | 거창군 보 | 조금 등의 청구 및 수 | 령권 위임 |
| 위임한 보조 | 금액 | 금 | | 원정 |
| | 위 임 인 | | 대 리 | 인 |
| 차량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1) | 대리인 : (* | 장치제작사) |
| 차량운행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1) | 주소 : 장치 위 사람을 대리인으. 대한 거창군 보조금 | 로 정하고 위 차량에 |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 | | 관한 모든 권리를 위 또한, 복대리인 선임- 년 월 | 을 허락한다. |
| | 정자로 본인필체로 또는 법인 도장 날 | · | | _ |

(붙임 3)

| |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신청자 | 대표자 | | | | | | | | | | | |
| | 주소 | | 연락처 : | | | | | | | | | |
| | 장치종류 | 합계 | 차량 DPF | | F | 건설기계 DPF | | 건설기계 엔진교 | | 교체 | | |
| 지급 신청 내용 | 장치구분 | | 자연대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소형 (RV,승합,화물 구분) | | | | 지게차(2톤급, 4톤급, 6톤급) 굴삭기(5톤급, 14톤급) | | | | | |
| | 사업량 | |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 | | | 차량현 | | | 변황 | | 장치현황 | | | | |
| 장치 부착 개조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기 형식 | 차량 총중량 | 배기링 | 장치 종류 | 장치 형식 (제작시) | 부착 일자 | | |
| 교체 | 합계 | | | | | | | | | | |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서식 1)
-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2)
- 6.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 8.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 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 차량소유자 | | 차 명 | | ¹⁾ 차량용도 | |
|----------------------------|------------------------------------|----------------|-----------|--------------------|----|
| 차량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 배 기 량 | CC | 출 력 | ps | 주행거리 | km |
| ²⁾ 부착 전 매연농도 | KD-147 %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엔신 오익소모략 | ℓ/1,000km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 장치 현황

| ³⁾ 장치구분 (인증번호) | () ⁴⁾ 장치종류 | 제품(일련) 번호 | |
|------------------------------|------------------------|------------------|-------|
| 제 작 사 | 장착장 | 장 착 일 (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DPF부착 2년, 엔진교체 3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DPF부착 2년, 엔진교체 3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 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 2 ²⁾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 3 ³⁾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동시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 4 ⁴⁾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 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제2종(p-DPF)의 경우 중형,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동시저감은 일체형, 분리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서식 2)

(20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거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이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 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 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 - ******)

업체명: 대표: (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 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 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종료시까지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거창군수 귀중

| 배출가 | 스 5등급차링 | 냙(건 | 설기계) | 저감장치 | 부착 | 신청서 |
|---|---|---|--|--|-------------------------|----------|
| | ① 성 명 | | | ② 생년월일 | | |
| 소유자 | ③ 주 소 (사용본거지) | | | | | |
| | ④ 전화번호 | | | ⑤ 휴대폰 | | |
| | ⑥ 차 명 | | | ⑦ 연 식 | | |
| 대 상 자동차 | ⑧ 자동차 등록 | 번호 | | | | |
| 7 7 6 7 1 | ⑨ 차대번호 | | | | | |
| 저공해조치 방법 | □ <u>노후경유</u> 차 조 | 감장 | 치부착_□ _ | 건설기계 저김 | <u> </u> | <u>착</u> |
| 개인정보 | 수집·이용·제공에 | 관한 | 동의여부 | □ 동의함 | | 동의안함 |
| 본인은 위 신청서를 저 | 와 같이 배출가스 출합니다. | 5등급 | 급 차량(건설: | 기계)에 대해 기 | 서감장치를 | 부착코자 |
| | | | | | 0년 | |
| コラフタ | · · | | 신청자 | : | (서명 또 | 는 인) |
| 거창군수 | | OLUII | /게이저브 E | 1 중H 제15 등 | 771\~ | |
| ◆ (수집·이·◆ (수집항목◆ (보유·이·◆ (동의 거· | 수집·이용에 관한 용목적) 노후경유차 탁) 성명, 생년월일, 용기간) 저공해조치 부권리 안내) 본 개 _목 해조치 신청 및 1 | 저공하 주소, 완료/ 인정보 | 해조치 신청어 전화 및 휴디 시까지 . 수집·이용어 | 따른 안내 등 H폰번호, 자동차 I 대한 동의를 : | 등록번호 | , |
| ◆ (제공기관 제54조여 ◆ (이용목적 ◆ (제공항목적 ◆ (보유·이· ◆ (동의 거 | 제공에 관한 안내 산) 국가, 지방자치단 시 따른 자동차 배출 석) 노후경유차 저공 닦) 성명, 생년월일, 용기간) 저공해조치 부권리 안내) 본 개 독치 신청 및 안내기 | 체, 절 ⁵ 가스 3 해조치 주소, 완료 ² 인정도 | 차대행자(한국 정보관리 전신 신청에 따른 전화 및 휴디 시까지 ! 제공에 대한 | 자동차환경협회), 난망 설치·운영 은 안내 등 폰번호, 자동차 | 「대기환경 기관(한국환 등록번호 | 환경공단) |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아래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①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②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④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거창군 공고 제2020 - 133호

『남하 내곡마을 ~ 구88고속도로 연결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남하 내곡마을 ~ 구 88고속도로 연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남하 내곡마을 ~ 구 88고속도로 연결공사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일원

다. 사 업 내 용 : 도로개설 L=194.0m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2. 보상내용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일원(붙임참조)

나. 지 장 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2)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 | | | 고 | 부 상 | 편 | 입 | 소 유 자 | | 비고 |
|----|------------|--------|----|---------|----|-------|--|--------|----|
|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지목 | 면적 | 주 소 | 성 명 | |
| 1 | 남하면 양항리 | 1138-5 | 도 | 1,847 | 도 | 9 | | 국(건설부) | |
| 2 | 남하면 양항리 | 1170 | 답 | 1,490 | 답 | 594 | | 거창군 | |
| 3 | 남하면 양항리 | 813-3 | 답 | 103 | 답 | 103 | | 거창군 | |
| 4 | 남하면 양항리 | 812 | 전 | 219 | 전 | 120 | | 거창군 | |
| 5 | 남하면 양항리 | 1138-3 | 도 | 141 | 도 | 89 | | 국(건설부) | |
| 6 | 남하면 양항리 | 798-2 | 전 | 432 | 전 | 317 | | 거창군 | |
| 7 | 남하면 양항리 | 798-7 | 전 | 297 | 전 | 209 | | 거창군 | |
| 8 | 남하면 양항리 | 798-1 | 전 | 240 | 전 | 169 | | 거창군 | |
| 9 | 남하면 양항리 | 산9-7 | 임 | 129 | 임 | 74 | | 거창군 | |
| 10 | 남하면 양항리 | 1138 | 도 | 499 | 도 | 19 | | 국(건설부) | |
| 11 | 남하면 양항리 | 1184 | 도 | 792 | 도 | 577 | | 국(농림부) | |
| 12 | 남하면 양항리 | 1182 | 구 | 798 | 구 | 50 | | 국(농림부) | |
| 13 | 남하면 양항리 | 1168 | 답 | 3037.4 | 답 | 17 | 거창군 거창읍 국농소2길68 | 김 동 호 | |
| 14 | 남하면 양항리 | 1171 | 답 | 562 | 답 | 50 | | 거창군 | |
| 15 | 남하면 양항리 | 1172 | 답 | 1,985 | 답 | 110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73-1 | 김동호 | |
| 16 | 남하면 양항리 | 1173 | 답 | 2,423 | 답 | 361 |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823 | 송용훈 | |
| 17 | 남하면 양항리 | 815-2 | 답 | 201 | 답 | 48 | | 경상남도 | |
| 18 | 남하면 양항리 | 816 | 답 | 85 | 답 | 6 | | 경상남도 | |
| 19 | 남하면 양항리 | 817 | 답 | 5422 | 답 | 292 | 대구 동구 신천동 454-1 | 송현목 | |
| 20 | 남하면 양항리 | 818-2 | 답 | 493 | 답 | 26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 로4길65,104동1404호 (구로구,구로주공아파트) | 김주영 | |
| 21 | 남하면 양항리 | 818-4 | 답 | 2645 | 답 | 234 | 거제시 고현동468 한려하이츠빌라505호 | 윤미자 | |
| 22 | 남하면 양항리 | 818-1 | 답 | 2299 | 답 | 173 | | 경상남도 | |
| 23 | 남하면 양항리 | 820 | 천 | 893 | 천 | 120 | | 경상남도 | |
| 24 | 남하면 양항리 | 1121 | 천 | 195,203 | 천 | 839 | | 경상남도 | |
| 합 | 계 | | | 222,235 | | 4,847 | | | |

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LPG엔진 개조 지원사업 시행 공고

거창군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자동차의 LPG 엔진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신청 기간 : 2020. 1. 28.(화)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사업 규모: 20,875천원(예산범위내)

다.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u>2005년 12월 31일</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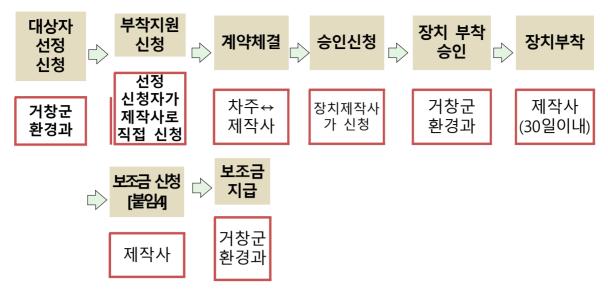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2) 사업규모 : 20,875천원(예산범위내)

⇒ 2019년도 이월물량 3대분(10,438천원) 포함

2. 사업진행절차

○ 신청자가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장치 부착이 가능할 경우 신청자가 환경과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장치제작사에 의뢰. 장치제작사에서 거창군으로 사업 신청



3. 지원조건(※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공고일 기준 현재 거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미체납자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4. 신청방법

-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에 부착 문의 및 신청 * 아래의 [별표1]을 참고하여 제작사에 소유자가 직접 문의
- 차부착(교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거창군 환경과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통보⇒ 장치제작사 의뢰⇒장치제작사가 거창군으로 사업
 승인 신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계약서에 의한 계약 / **[붙임2]**
 - 장치 부착 신청과 보조금의 청구, 수령의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 /[붙임3]

5. 유의사항

- 보조금지급규정[별표2]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적용 조건에 적합한 환 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 이내에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반납(※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

- O 의무 부착기간 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거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은 불가
 -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시항은 「'20년 운행차 배출기스 저감시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름
- **6. 기타 문의사항** :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2)

[별표 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업체 현황(환경부 인증)

□ 경유자동차 LPG 엔진 개조 제작사 현황

| No | 제 작 사 | 전화번호 | 비고 |
|----|---------|--------------|----|
| 1 | 이알인터내셔널 | 031-940-2560 | |

[별표2]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등

□ LPG 엔진 개조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장치구분 | | | 장치 | 가격 | | 유지 | |
|----------|--------|-------|-------|------|------|-----|--|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관리비 | |
| | | 게 | 모오금 | 금액 | 부담율 | | |
| LPG | RV, 승합 | 4,432 | 4,012 | 420 | 9.5% | 47 | |
| 엔진 개조 | 1톤 화물 | 4,432 | 4,122 | 310 | 7.0% | 47 | |

-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LPG엔진개조: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붙임 1]

| | 노후경유치 | 가 LPG엔진 |]개조 지원사업 신기 | 청서 | | | | |
|------------|-----------------|---------|-----------------------------------|-----------|--|--|--|--|
|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 | | |
| 소유자 | ③주 소 | | | | | | | |
| | ④전화번호 | | | | | | | |
| | ⑥자동차번호 | | ⑦차대번호 | | | | | |
| | | □ 연식(|)년 □ 배기량(|)CC | | | | |
| | ⑧자동차제원 | 정원(승합) | 명 | | | | | |
| 대 상 자동차 | | 중량(화물) | □적재중량()톤 □총 | -중량()톤 | | | | |
| 71071 | ⑨차명 및 형식 | / | ⑩용 도 | | | | | |
| | ⑪등록일자(차령) | 년 월 | 일 (년월) | | | | | |
| | ①주행거리 | | ③사용 연료 | | | | | |
| 위와 같 | 니 이 노후경유차 LP | G엔진개조 사 | 업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2020 년 | 월 일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거창군수 | 귀하 | | | | | | | |
| 구 | | | | | | | | |
| 비 서 | 신청인 제출서류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 | |
| - 류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법」 제21조제1항에 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 | | | | |
| ' ' | :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붙임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계약서

2020년 거창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대상차량 현황

| 차 량 번 호 | | 소유자 | 생계형 해당 여부 유□, 무[| | |
|---------|--------|--------|------------------|----|--|
| 차량 총중량 | kg | 연 식 | 원동기 형식 | | |
| 저속운행 여부 | 유□, 무□ | 원동기 형식 | H スユ | 마워 | |
| 장치 제작사 | | 장치 종류 | - 보조금 만원 - | |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 · 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희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장치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개조)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 부착 및 개조 시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엔진개조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폐차시 까지),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 계약서 원본은 거창군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 〈장치 제작사〉 | 〈차량 소유자〉 | | | |
|-----------------|--------------------|--|--|--|
| 업체명 : | 차량번호 : | | | |
| 소재지 : | A H · (AH IT P AL) | | | |
| 연락처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연 락 처 : | | | |

[붙임3]

| | 위 | ¢. |] 장 |
|---------------------------|-------------------------|------------|--|
| 차 량 의 표 시 | 차량등록번호 차 명 저감장치종류 | : | |
| 장치부착(엔 | 진개조)일 | | 년 월 일 |
| 위임의 내용 | | 거창군 보 | 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 위임한 보조 | 금액 | 금 | 원정 |
| | 위 임 인 | | 대 리 인 |
| 차량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1) | 대리인 : (장치제작사) ① |
| 차량운행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1) | 주소: 장치제작사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에 대한 거창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 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
|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 | |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 | 정자로 본인필체로 또는 법인 도장 날 | • | |

[붙임4]

| |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신청자 | 대표자 | | | | | | | | | | | |
| | 주소 | | | | | | 연락 | 처 : | | | | |
| | 장치종류 | 합계 | | DPF | | P-: | DPF | 저공해(엔진 <i>7</i> | , | | I·NOx 적감 | |
| 지급 신청 | 장치구분 | 자연대형, 자연- - 복합소형, 복합- (RV,승합,화물 - | | 합중형 | (저감호 | , 소형 효율 70% 마만구분) | RV, 승합, 화물 | | | 면재생, 합재생 | | |
| 내용 | 사업량 | |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차량 | 현황 | | 장치 | 현황 | | | |
| 장치 부착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 기 형식 | 차량 총중 량 | 배기량 | 장치 종류 | 장 형 (제 ² | 4 | 부착 일자 | |
| 개조 교체 | 합계 | | | | | | | | | | |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붙임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 차량소유자 | | | 차 명 | | ¹⁾ 차량용도 | |
|----------------------------|----------|----|----------------|-----------|--------------------|----|
| 차량번호 |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 배 기 량 | | CC | 출 력 | ps | 주행거리 | km |
| 2) | KD-147 | % | | | E0111≅L | |
| ²⁾ 부착 전 매연농도 | lug-down | % | 엔진 오일소모량 | ℓ/1,000km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 511281 | 무부하급기속 | % | | | (2000) | |

□ 장치 현황

| ³⁾ 장치구분 (인증번호) | () ⁴⁾ 장치결 | 제품(일 번호 | 련) |
|------------------------------|-----------------------|--------------|---------------|
| 제 작 사 | 장착경 | 장 착 (구조변경 | 일 일)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퍼센트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2020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인), 연락처(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ㅇㅇㅇㅇ회사 대표자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 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 2 ²⁾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
- 3 ³⁾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동시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 4 ⁴⁾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 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제2종(p-DPF)의 경우 중형, 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동시저감은 일체형, 분리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붙임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 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 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공고 제2020 - 135호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노후 통학차량인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로 전환한 차량에 대해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거 창 군 수

-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2. 신청기간 : 2020. 1. 28. ~ 예산 소진시까지(5대)
- 3. 지원대상
 -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이하)을 폐차 (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또는 공동소유자
 -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갱신 허가)를 얻은 자
 - 경유 소형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는 지원 대상 제외
 - ※ 노후 소형 경유 통학차량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 중형 경유차 또는

노후 LPG차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공고 후 신청 미달 시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 4. 사업예산 : 25백만원
- 5. 사 업 량 : 5대[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6. 지원금액: LPG 신차 구입 시 500만원 정액 지원
- 7. 대상자선정
 - O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19년 수요조사 시 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 우선
 - 기 신청자가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 사업비 발생 시는 차령(생산 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선정 (국·공립시설은 직영 시 대상 제외)
 - O 대상자 확정 통보: 개별통보
- 8.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 | 폐차 · 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
|-------------|------------------|----------------|--------------------------|-----------|--------|
| 신청자 | 거창군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거칭군 |
| ⇒ | ⇒ | ⇒ | | ⇒ | ⇒ |
| 거창군 | 지원대상자 | 자동차 판매사 | | 거창군 | 자원대상자 |

- 9.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안내
 - O 접 수 처 : 거창군 환경과
 - O 접수방법: 방문접수
 -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O 구비서류
 - (공통) 사업 지원신청서 1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비영리법인 등) 공통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10. 보조금 지급 신청

- O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군에 제출
- 지원대상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와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노후 경유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
- 보조사업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6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 ※ 다만,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11.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O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군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휴대전화 등)를 통해 지급 내역을 통보

12.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O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3. 기타사항

-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O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과(☎055-940-3492)로 문의
- 붙임 1.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2.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3. 위임장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 | 성 명 | | | 생년 | | | | |
|-------------|------------|-----------------|-------------------|---------|-------|-------------|-----------|-----|
| | (법인/사업자명) | | | (법인/사업/ | 시등록번호 | ই) | | |
| 신청자 | 주 소 | | | | | | | |
| | 연락처 | (휴대폰) | | | | | | |
| | 건탁시 | (전화) | | | | | | |
| ام احالما | 성명 | | | | 생년월 | 일 | | |
| 어린이 | 주소 | | | | I | | | |
| 통학차량 신고인 | | | | (전화번 | 호: | | |) |
| で単し | 구분 ① 어린이집 | 집 ② 유치원 | ③ 초등 | 등(특수)학교 | 2 ④학 | 원 ⑤ 체육 | 시설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소유자 | 주소 | | | | | | | |
| | | | |) | | | | |
| | 차명 | | | 연료 ① |) 경유 | ② LPG | | |
| 자동차 | 등록번호 | | 정원 | | | 제작연도 | | |
| | | | | | 1 - 2 | 21 -2 -2 2 | | |
| | 년 어린이 통학 | | | | 기순에 | 무합하여 | 보조· | 금을 |
| 지원받. | 고자 위와 같이 | 지원신청서를 | 를 제출힙 | 니다. | | | | |
| | | | | | | 00000 | 61 | الد |
| | | | | | | 2020년 | 월 | 일 |
| | | | | | 신청기 | \} : | | (인) |
| | | | | | | | | |
| 거창 | 군수 귀하 | | | | | | | |
| | | | | | | | | |
| ※ 첨부 | 서류 | | | | | | | |
| 1. (공 | 통) 자동차 등록 | 증 사본, 어린 | 민이통학 ^년 | 버스신고필증 | 증 사본 | , 자가용지 | 동차 | 유상 |
| 운경 | · 허가증명서 사는 | 르, 개인정보 = | 수집·이용 | 및 제3자 | 위탁·제 | 공 동의서 | 각 1년 | 1 |
| 2. (법 | 인인 경우) 사업 |] 자등록증 시 | ·본 1부 | | | | | |
| (日) | 영리법인 등) 고 | 1유번호증 시 | 본 1부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square $0 \sim 1 \square$ |
|------------------------------|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ㆍ(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 | 성명(비상(기업) | | | 생년 ⁽ | | | | | |
|---------------|--|--------|------|-----------------|--------|-------------|----|--|--|
| | (법인/사업자명) | | | (법인/사업계 | 사등폭면오) | | | | |
| 신청자 | 주 소 | | | | | | | | |
| | 연락처 | (휴대폰) | | | | | | | |
| | 년 기 기 | (전화) | | | | | | | |
| 어린이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
| 공약머스 신고인 _ | 주소 | | | | | | | | |
| | | | | (전화번. | 호: | |) | | |
|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 | | | | | | |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
| 소유자 | 주소 | | | | | | | | |
| | | | | (전화번. | ই: | |) | | |
| 새로 | 차명 | | | 연료 LF | 연료 LPG | | | | |
| 구입한 자동차 | 등록번호 | | 차종(정 | 원) | 제조 | 라 연도 | | | |
| 어리(|) 토하차랴이 I | DC차 저하 | 기의 시 | 어 기주에 | 브하하여 | H スユら | 지근 | |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공통)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 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2.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위 임 장

| | 주 | 소 | | | | | | |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성 | 명 | (인) | | | | | |
| | 생 년 월 | 일 | | | | | |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 주 | 소 | | | | | | |
| | 성 | 명 | (인감도장) | | | | | |
| | 생 년 월 | 일 | | | | | | |
| 시 설 명 | | | | | | | | |
| E 計 山 入 | 차명 | |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 | | | | |
| | 등록번호 | | 연료 | 제작연도 | |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위임자) 1부.

2020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보일러 보급을 통해 군민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일반가구 : 200,000원/대(정액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0,000원/대(정액지원)
 -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물량
 - 일반가구 : 10대(1가구당 1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대(1가구당 1대)
- 신청대상자

가. 일반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보일러1)'로 교체하는 거창군 주택소유주

¹⁾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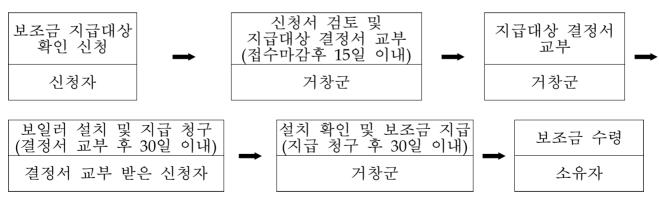
- 주택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을 받아 세입자도 가능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서식3]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 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나. 저소득층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u>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u> 계층)에게 지원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u>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u>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본 사업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19.11.30. 기준 230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2.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

○ 지원절차



- <u>접수기간 : 2020. 1. 28(화) ~ 2.20(목) / 접수기간 경과후 잔여물량은</u> 예산소진시까지 사업진행
 - 접수방법 : 환경과 방문접수(물량범위내 선착순 접수)

- 문의처 : 거창군청 환경과(☎ 940-3490~3492, 저녹스보일러 담당자)
- 구비서류(주택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3.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급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1. 선착순 접수후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 2.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 * 저소득층 신청가구도 동일 적용
- ①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
- ② 주택소유주
- 선정결과 :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개별통보
- 보일러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 요청시 구비서류(원본 제출)
 - ①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서식 2]
 - ②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③ 설치 전, 후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총 4부)
 - ④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서식 3]

4.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지원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거창군 의견에 따름)

5. 유의사항

- 신청전 지원대상 보일러의 종류 확인 및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필히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가능 여부 사전 문의 바람.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저녹스 보일러를 철거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
- 보일러의 설치확인은 직급대상자와 보일러 판매사가 작성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으로 대체.
- 위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 및 기준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치침」에 따른다.
-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부.
 -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4.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1부. 끝.

서식 1

|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 금 지급 대상 | 신청서 |
|---------------------|--|-----------------|--------------------|
| 1. 신청인 (주택소유 | -자 또는 세입자)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핸드폰 | () - |
| 해당란에 (√) 표기 | 주택소유주(), 세입자(), 일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 2. 주택 개요 | | | |
| 소유자명 | | | |
| 주 소 | | | |
| 설치 소재지 | (일괄 신청 시, 설치소재지가 상이할 경 | 우 각각 구분 기재) | |
| 전 화 번 호 | () - | 핸드폰번호 | |
| 설치 대상 | 기존 보일러 설치연도 : 년 월 | l(일괄 신청 시, 설치연도 | 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
| 3. 설치 보일러 개 | 요 (일괄 신청 시, 설치보일러가 상이할 | 경우 각각 구분 기재) | |
| 제작사 | | 판매사(설치업체) | |
| 모델명 | | 제조번호(S/N) | |
| 보일러 용량 | (톤/시간, Kcal/Hr) | 사용연료 및 인증기간 | / |
| 설치 대수 | | | |
| 4. 신청 금액 | | | |
| 총 소요금액 | 천원 | 보조금신청금액 | 천원 |
| 5. 신청 설비 타기 | 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 | |
| 자금 사용 여부 | × | 나용 자금용도 및 금액 | |
| 위와 같이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 | 스금 지급 대상자로 | 신청합니다. |
| | | | 2020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거창군수 | 귀하 | | |
| 【위임사항】 | 대리인(신청인) : (서명 | 또는 인), 주민등록 | 번호 : |
| 저녹스 보일리 | 거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시 | -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 | 위임자(주택소유자 또는 일괄 | 신청 시 대상 가구) | : (서명 또는 인) |
| | · 견적서, 건물 등기부 등본 또\ 우 가구별로 계약서 첨부), 저2 | | |

| |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 | | | | |
|-------------|------|-----------------------|--|--|--|--|--|--|
| 사업 | 결명 | 2020년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 | | | | |
| ો અં ડો | 성 명 | 전화번호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 주택 개요 | 소유자 | 전화번호 | | | | | | |
| | 주 소 | | | | | | | |
| 지급요 | 청금액 | 원 | | | | | | |
| | 은행명 | | | | | | | |
| 입 금 희망은행 | 예금주 | | | | | | | |
| | 계좌번호 | | | | | | | |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0. . . .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일괄 신청의 경우, 가구별 통장 사본 첨부)
- 설치 완료된 지원 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 기존 설치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서식 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1. | 보일러 | 제작사 및 | 모델명 : | "일괄 | 신청시 | 설치 | 보일러가 | 상이할 | 경우 | 각각 |
|----|------|--------|--------|-----|-----|----|------|-----|----|----|
| | 구분 기 | 재 또는 길 | 목록 제출" | | | | | | | |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설치대수 :
- 2. 설치장소(주소)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 3.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첨부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제조명'판 표시 사진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일괄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서명명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 4)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가나다순]

| 제작사 | 인증모델 | 대표전화 |
|-----------------------|--|------------------|
| ㈜경동나비엔 (72) | NCB900-43L, NCB900-52L, NCB780-275K, NCB780-235K, NCB780-36K, NCB780-32K, NCB780-32K, NCB780-27K, NCB780-22K, NCB780-18K NCB762-32K,LNG, NCB762-27K,LNG, NCB762-22K,LNG, NCB762-18K,LNG, NCB752-32K,LNG, NCB752-27K,LNG, NCB752-22K,LNG, NCB752-18K,LNG, NCB782-36K,LNG, NCB762-36K,LNG, NCB762-36K,LNG, NCB711-32K, NCB711-37K, NCB711-27K, NCB711-22K, NCB711-18K, NCB780-36K, NCB780-32K, NCB780-27K, NCB780-22K, NCB780-18K, NCB760-36K, NCB760-32K, NCB760-27K, NCB760-22K, NCB780-18K, NCB750-32K,LNG, NCB750-27K,LNG, NCB750-22K,LNG, NCB750-36K,LNG, NCB752-43L,LNG, NCB752-36L,LNG, NCB752-32L,LNG, NCB752-31L,LNG, NCB752-31L,LNG, NCB750-36L,LNG, NCB750-31L,LNG, N | 1588-1144 |
| ㈜귀뚜라미 (22) | AST 콘덴싱-22H (LNG,FF), AST 콘덴싱-32H (LNG,FF), AST 콘덴싱-27H (LNG,FF), 거꾸로 NEW 콘덴싱-30H, 거꾸로 NEW 콘덴싱-26H, 거꾸로 NEW 콘덴싱-21H, 거꾸로 NEW 콘덴싱-30HN, 거꾸로 NEW 콘덴싱-26HN, 거꾸로 NEW 콘덴싱-21HN, 거꾸로 NEW 콘덴싱-14HN, 거꾸로 NEW 콘덴싱-17HN, 거꾸로 NEW 콘덴싱-30HW, 거꾸로NEW콘덴싱-26HW, 거꾸로NEW콘덴싱-20HW, 거꾸로NEW콘덴싱-17HW, 거꾸로NEW콘덴싱-17HW, 거꾸로NEW콘덴싱-14HW, 거꾸로 NEW 콘덴싱-14H, AST 콘덴싱-14H (LNG,FF), AST 콘덴싱-17H (LNG,FF), 거꾸로 NEW 콘덴싱-26DW | 1588-9000 |
|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8) | LGB-F219CO, LGB-F279CO, LGB-F329CO, LGB-F179CO, LGB-F179CC, LGB-F219CC, LGB-F279CC, LGB-F329CC | 032- 870-7100 |
| 린나이코리아㈜ (101) | RC500-27KFD, RCM500-27KFD, RC500-27KFKD, RC5000-27KFD, RCM6000-27KFD, RC500-22KFD, RCM500-22KFD. RC500-22KFD, RCM6000-22KFD, RC500-18KFD, RCM500-18KFD, RC500-18KFD, RCM6000-18KFD, RC500-18KFD, RC500-18KFD, RC500-27MFD, RC500-27MFD, RC500-27MFD, RC500-27MFD, RC500-27MFD, RC500-22MFD, RC500-22MFD, RC500-22MFD, RC500-22MFD, RC500-22MFD, RC500-22MFD, RC500-22MFD, RC500-22MFD, RC500-18MFD, RC500-18MFD, RC500-18MFD, RC500-27KF, RC500-22KF, RC500-22KF, RC500-22KF, RC500-15KF, RC500-15KF, RC500-15KF, RC500-15KF, RC500-15KF, RC500-18KF, RC500-18MF, RC500-18KF, RC500-18MF, RC500-18MF, RC500-18MF, RC500-32MF, RC500-37KF, RC500-37KF, RC500-37MF, | 1544-3651 |
| ㈜알토엔대우 (11) | ADB-N250BMN, ADB-N160BMN, ADB-N200BMN, ADB-250BELN, ADB-160BELN, ADB-200BELN, ADB-N301BON, ADB-N251BON, ADB-N201BON-HR, ADB-N161BON-HR, ADB-N201BON | 1588-7339 |
| 대성쎌틱 에너시스㈜ (16) | DEC-36K FO, DEC-32K FO, DEC-27K FO, DEC-22K FO, DEC-18K FO, DEC-14K FO, DEC-30S FO, DEC-25S FO, DEC-16S FO, DEC-13S FO, DEC-20S FO, DNC-32K FO LNG, DNC-27K FO LNG, DNC-18K FO LNG, DNC-14K FO LNG,DNC-22K FO LNG, | 1588-8577 |

^{※ 2019.11.30.} 기준 인증현황이며, 매월 말 el.keiti.re.kr을 통해 저녹스 보일러 인증현황이 갱신

보상계획열람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신라촌 조성사업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3.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라촌 조성사업 진입로 확장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10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확장 L=283m B=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100번지 등 11필지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442)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거창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 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 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단,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 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편입 용지조서

| 일련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비고 |
|----|------------|---------------------|-----|----------|--------------------|--------------------------|-------|---------------|-----|----|
| 번호 | | . – | | (m²) | (m ²) | 주소 | 성명 | 권리명 | 권리자 | |
| 합계 | | | | 4,617 | 468 | | | | | |
| 1 | 거창읍 가지리 | 1085-2 | 도 | 1,369 | 3 | | 거창군 | | | |
| 2 | " | 946-4 | 도 | 13 | 4 | | 거창군 | | | |
| 3 | " | 1093-2 | 도 | 7 | 7 | 서울시 관악구 노량진 동 232-120 | 이윤기 | | | |
| 4 | " | 1099-1 | 도 | 83 | 83 | 거창읍 가지리 539 | 이기원 | | | |
| 5 | " | 1711 | 도 | 2,131 | 9 | | 국토교통부 | | | |
| 6 | " | 1100 (1100-1) | 과수원 | 37 | 37 | 거창읍 상림리 13-8 | 임창근 | | | |
| 7 | " | 1102-1 | 도 | 50 | 10 | _ | 정내수 | | | |
| 8 | " | 1118-4 (1118-9) | 답 | 1 | 1 | 거창읍 가지리 1161-6 | 정원식 | | | |
| 9 | " | 1118-4 (1118-10) | 답 | 47 | 47 | 거창읍 가지리 1161-6 | 정원식 | | | |
| 10 | " | 1118-5 | 천 | 859 | 247 | | 거창군 | | | |
| 11 | " | 1435 (1435-2) | 답 | 20 | 20 | 거창읍 가지리 660-1 | 정순화 | | | |

| | 0 | 의 | 신 | 청 | 서 | |
|----------------------------------|------|----------|-------|------|----------|---------------------|
| ① 사 업 명 | 신라촌 | 조성사업 | 진입로 후 | 확장공/ | \ | |
| ② 사 업 위 치 | 경남 거 | 창군 거칭 | 음 가지 | 믜 일원 | [| |
| ③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 <u>~</u> | | | | |
| ④ 이 의 신 청 | 성 명 | | | 생년 | 견월일 | |
| 제 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፮: | | |) |
| ⑤ 이의신청 내용 | | | | | | |
| 「공익사업을 ⁻ 의거 보상계획 열 | | | | | | 」 제15조의 규정에 합니다. |
| | | 2020년 | 월 | 일 | | |
| | 제 출 | 자 | | (| (서명 또· | 는 인) |
| 거창군수 귀 | ōŀ | | | | | |

거창군 공고 제2020-152호

거창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08-43(2008.9.25.)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위천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9.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하수도)
 - 명 칭 : 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 가. 부지면적 : 4,105 m²
 - 나. 사업개요 :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100 m³/일)
 - 당초 : 500 m³/일, 변경 : 600 m³/일 (증 100 m³/일)
- 4. 사업 시행자
 - O 주 소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성 명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 9. 의견제출 및 열람: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O 성 명:
- O 연락처:
- O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일런 번호 소재지 | | 지번 지 | 지목 | 지적 면적 (m²) | 편입 면적 (m²) | 소유지 | - | 소유권 | 비고 | |
|--------------|---------|-------|----|------------------|------------------|-----|-----|-----|----|--|
| · 인호 | | | 주소 | | | 성명 | 권리명 | 권리자 | | |
| 합계 | - | - | - | 4,846 | 4,105 | | | | | |
| 1 | 위천면 남산리 | 104-3 | 잡 | 4,846 | 4,105 | - | 거창군 | | | |

거창군 공고 제2020-158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50호선,소로3-101호선) 실시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50호선,소로3-10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9.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 종류 | 명 칭 - | 위 | 치 | | 시 | 행 | 규 | 모 | | 시행 | 구간 | 최 초 | 비고 |
|----|-----------------------|-----|----|----|----|-----|-----------|----------|-------------|-------|-------|-----------------------|----|
| ず市 | | 읍·면 | 리 | 구분 | 류별 | 번호 | 연장 (m) | 폭 (m) | 면 적 (m²) | 기점 | 종점 | 결정일 | 미끄 |
| 교통 | 도시계획도로 (소로3-250호선) | 거창 | 송정 | 소로 | 3 | 250 | 580 | 6 | 5,267 | 소1-29 | 대1-11 | 거고152호 ('17.12.7.) | |
| 시설 | 도시계획도로 (소로3-101호선) | 거창 | 송정 | 소로 | 3 | 101 | 74 | 6 | 547 | 소1-30 | 소3-57 | 거고43호 ('08.9.25.)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 50132)

- 사 업 명 : 송정 운정~절부마을(소로3-250호선 등2) 개설공사

3.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3-250호선, 소로3-10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일련 번호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기 | τ | 관 계 | ∥인 | 비고 |
|----------|------------------|--------|-----|----------|----------|------------|--------------|-----|----|-------------|
| 번호 | T (11 (1) | | ~ - | (m²) | (m²)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합계 | - | - | _ | 51,323 | 5,814 | | | | | |
| 1 | 송정리 | 344-1 | 전 | 1,150 | 6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박*영 | | | 소로 3-250 |
| 2 | 송정리 | 122 | 답 | 1,615 | 210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김*숙외1인 | | | " |
| 3 | 송정리 | 355-7 | 전 | 278 | 9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오*용 | | | " |
| 4 | 송정리 | 122-5 | 도 | 1,609 | 293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최*남 | | | " |
| 5 | 송정리 | 122-6 | 답 | 656 | 15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최*남 | | | " |
| 6 | 송정리 | 122-7 | 답 | 483 | 40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최*렬 | | | " |
| 7 | 송정리 | 122-8 | 답 | 2,280 | 484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최*렬 | | | " |
| 8 | 송정리 | 1069 | 도 | 1,511 | 587 | | 국(건설부) | | | " |
| 9 | 송정리 | 1061-3 | 구 | 32,800 | 1,275 | | 국(농림수산 부) | | | " |
| 10 | 송정리 | 122-9 | 구 | 1,464 | 903 | | 국(농림수산 부) | | | " |
| 11 | 송정리 | 363-2 | 과 | 647 | 40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고*자 | | | " |
| 12 | 송정리 | 364 | 전 | 496 | 19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박*규 | | | " |
| 13 | 송정리 | 1072 | 도 | 532 | 360 | | (국)건설부 | | | " |
| 14 | 송정리 | 626-2 | 구 | 394 | 67 | | 국(농림수산 부) | | | " |
| 15 | 송정리 | 128-10 | 답 | 1,332 | 251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김*옥 | | | " |
| 16 | 송정리 | 1073 | 도 | 50 | 10 | | (국)건설부 | | | " |
| 17 | 송정리 | 396-1 | 답 | 1,570 | 698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장*배 | | | " |
| 18 | 송정리 | 396-4 | 대 | 255 | 186 | | 거창군 | | | 소로 3-101 |
| 19 | 송정리 | 1075 | 도 | 2,192 | 97 | | (국)건설부 | | | " |
| 20 | 송정리 | 468 | 대 | 76 | 23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장*룡 | | | " |
| 21 | 송정리 | 467 | 대 | 109 | 42 | | 거창군 | | | " |
| 22 | 송정리 | 466-2 | 대 | 149 | 76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최*준 | | | " |
| 23 | 송정리 | 466-1 | 도 | 78 | 61 |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최*준 | | | " |
| 24 | 송정리 | 466-3 | 도 | 15 | 14 | | 거창군 | | | 11 |
| 25 | 송정리 | 1075-1 | 도 | 393 | 48 | | (국)건설부 | | | " |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 FAX 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제출서식]

- O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_
- O 성 명:
- O 연 락 처 :
- O 기타 참고사항.

거창군 공고 제2020 - 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안내문을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62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0. 1. 29. ~ 2020. 2. 12.(14일간)

3. 공고장소 :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3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2020. 1. 29.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0 - 164호

건설기계조종시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일반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엽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28. ~ 2020. 2. 12.(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건설기계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
| 3톤미만지게차 | 경남27-2008-00 **-** | 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1길 * | 이사감 | 2020.1.23. |
| 굴착기 | 경남27-2005-00 **-** | 정**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 | 주소불명 | 2020.1.23. |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창군 건설과 건설담당(055)940-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8

거창군수

◉거창군 공고 제2020 - 165호

거창군계획시설(소로2-196호선,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03호('95.5.12)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소로2-196호선, 주차장)의 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9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종류 | 시설명 | 위 | 치 | | | 시 행 | 규모 | | | 시행 | 위치 | 최초 | 비고 |
|---------|-----------------------|----|----|----|----|-----|------|---|-------|---------------------|-----------------|----------------------|----|
| ठेग | 시설명 | 偣 | 리 | 등급 | 류별 | 번호 | 연장 | 폭 | 면적 | 시점 | 종점 | 결정일 | 미꼬 |
| 군 계획 | 교통시설 (주차장) | 가조 | 마상 | | | | | | 2,065 | 가조면 수월리 446-3 | | 경고103호 ('95.5.12) | |
| | 도시계획도로 (소로2-196호선) | 가조 | 마상 | 소로 | 2 | 196 | 88.5 | 8 | | 가조면 수월리 449-8 | 가조면 마상리 9 | 경고103호 ('95.5.12)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다. 사업명: 가조 마상지구 주자창 및 도시계획도로(소로2-196호선)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0.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1) 교통시설(주차장)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 번 | 지목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 유 | 자 | 소유 이외의 | , _ | 비고 |
|----------|-----|-----|------|----|----------|----------|---|-----|-----|-----------|-----|----|
| 년오 | | | | | (m²) | (m²) | | 주 소 | 성명 | 권리명 | 권리자 | |
| 합계 | 가조면 | | | | 2,065 | 2,065 | | | | | | |
| 1 | 수월리 | 446 | - 8 | 답 | 17 | 17 | | | 거창군 | | | |
| 2 | 수월리 | 446 | - 7 | 답 | 8 | 8 | | | 거창군 | | | |
| 3 | 수윌리 | 446 | - 10 | | 387 | 387 | | | 거창군 | | | |
| 4 | 수월리 | | - 3 | | 907 | 907 | | | 거창군 | | | |
| 5 | 수월리 | 449 | - 11 | 답 | 746 | 746 | | | 거창군 | | | |

2) 도로(소로2-196호선)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 번 | 지목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 ਸੰ | 자 | 소 (이외의 | | 비고 |
|----------|-----|-----|------|----|----------|----------|---|----|--------------|------------|-----|----|
| 건모 | | | | | (m²) | (m²) | 주 | 소 | 성명 | 권리명 | 권리자 | |
| 합계 | 가조면 | | | | 1,760 | 750 | | | | | | |
| 1 | 수월리 | 449 | - 10 | 답 | 296 | 296 | | | 거창군 | | | |
| 2 | 마상리 | 861 | - 28 | 도 | 1,039 | 29 | | | 국 (국토교통부) | | | |
| 3 | 마상리 | 9 | 2 | 답 | 425 | 425 | | | 거창군 | | | |

-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6. 의견제출 및 열람
 - 가.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oodles1217@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 | 견 | 서 |
|---|------------|---|---|
|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시 | 나 유 | | |
| ○ 성 명 :○ 연락처 : | |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끝".